

함양군 공고 제2019-1283호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 등의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함 양 군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 시행자	위 치	사 업 량	시행기간	비 고
태관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 대천리 일원	하천정비 L=2.11km, B=6~29m	2020년 01 ~ 2023.12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일체(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별첨)
- 나. 보상 대상 세부 목록은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12. 09. ~ 2019. 12. 29.(공고일로부터 20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055-960-4043)
- 다. 이의 신청 대상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라. 이의 신청 방법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이 서면 제출
- 마.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12월 이후(추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 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되 같은 법 제68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합니다.
- 나. 보상금 지급은 협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 이전登記되면 지급합니다.

보상계획공고·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손실보상협의⇒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6. 토 지 조 서

- 가. 편입토지 : 따로붙임
- 나.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의 일체
- ※ 함양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고시·공고란 참조

7. 기 타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통지 할 계획입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055-960-4043)로 문의바랍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따른 의견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함 양 군 수 귀하		
비 고	※ 의견서는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중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